

예산총칙

2019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824,453,875	24,733,616
일반회계	722,305,000	21,669,150
특별회계	102,148,875	3,064,466
공기업특별회계	77,293,291	2,318,799
상수도사업특별회계	34,035,765	1,021,073
하수도사업특별회계	43,257,526	1,297,726
기타특별회계	24,855,584	745,668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1,693,737	50,812
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	2,053,069	61,592
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	595,838	17,875
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	15,900,126	477,004
폐기물처리시설사업기타특별회계	3,837,270	115,118
지하수특별회계	775,544	23,266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,798,279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7,5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